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70
----------	------

제출연월일 : 2025년 5월 2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2018년 9월 서울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후 기존부지 내 복구(개축)에 따른 위치 이전으로 유치원 1개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치원 위치 변경: 1개교(안 별표 7)

- 서울상도유치원: 동작구 만양로3길 48 → 동작구 성대로21길 6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7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 의 :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5. 4. 10. ~ 2025. 4. 30.) 결과 : 의견 없음(별첨 3)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별첨 4)
-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별첨 6)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동작관악교육지원청(25교)의 동작구(9교)의 서울상도유치원의 위치란 중 “만양로3길 48”을 “성대로21길 6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7] 유치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7] 유치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5교)	동작구 (9교)	〈생략〉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5교)	동작구 (9교)	〈현행과 같음〉	
		서울상도유치원	동작구 만양로3길 48			서울상도유치원	동작구 성대로21길 62
		〈생략〉				〈현행과 같음〉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교명 변경 및 학교 신설로 인한 현판 등 제작·교체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0.>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학교의 주소 변경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판 등 제작·교체 비용이 발생하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기관 자체 예산으로 비용의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주무관 김정균(02-2282-8358)

【별첨 2-1】 학교 이전을 위한 소요금액

(단위: 천원)

학교급	학교명	공사비	용지비	기타 (비품비 등)	합계
유	서울상도유치원	9,887,858	-	152,040	10,039,898

【별첨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의견 없음 (이하 생략)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9조제2항 관련)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평 가 담 당	감사관	장학사	류호찬
입안주관부서	학교지원과	통보일	2025. 4. 9.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사항
안 [별표 7]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는 「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각급학교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관장사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 본 조례 일부개정은 서울상도유치원 위치 이전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위치 이전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부패를 유발할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안동의”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5A서울교육008			
정 책 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지원과		
	담당자명	김정균	전화번호	02-2282-8358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명	여인진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5년 04월 07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5년 04월 08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4월 08일				

【별첨 6】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일부개정)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김정균 (02-2282-8358)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목소희, 박지만, 임종수, 정명화, 여미애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별표7]	- 본 조례 개정안은 유치원 이전에 따른 위치 표시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원안 동의

【별첨 7】

관계법규

■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개정 2021. 9. 24.>

② (생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4. (생략)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 17. (생략)